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정 2009.01.01
개정 2009.08.28
개정 2016.06.30
개정 2017.12.05
개정 2018.06.12
개정 2021.03.11
개정 2022.02.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개정 2016.6.30)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아주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공학대학원 원우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학술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모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5.)

제 3 조 (설치)

본 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내에 둔다. (개정 2016.6.30.)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개정 2017.12.05.)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개정 2018.6.12)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공장견학 및 진단 연구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원 우 회 원

제 5 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 공학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원우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7.12.05.)

제 3 장 기 구

제 7 조 (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삭제 2018.6.12)
1. 임원회
2. 대의원회
3.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정 2017.12.05)

제 8 조 (삭제 2018.06.12.)

제 9 조 (삭제 2018.06.12.)

제 10 조 (삭제 2018.06.12.)

제 11 조 (삭제 2018.06.12.)

제 12 조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임원(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고문) 및 각 학과 학생회에
서 선출한 대의원(과대표 및 총무)로 본회를 구성한다.(개정 2009.8.28)

제 13 조 (대의원회 소집과 의결)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의결한다.

1. 정기회는 매년 학기 내 6월,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 직능)

대의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 임원 선거 및 선출 (개정 2017.12.05.)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의 심의
4. 예산 결산의 심의
5. 기타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 15 조 (대의원회 운영)

대의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회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28)

제 17 조 (삭제 2009.8.28.)

제 18 조 (임원회 소집)

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 임원회는 학기 초 원우회 임원들이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매 주 진행한다. (개정 2018.06.12)

제 19 조 (임원회 직능)

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결정, 예산안 작성
2. 원우회칙 제, 규정안의 작성 (개정 2018.06.12)
3. 대의원회의 결정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8.06.12)
4. 예산 중 예비비의 전용
5. 기타 긴급사항의 결의 집행

제 20 조 (학과별 학생회 구성)

학과별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학과별 학생회 활동)

학과별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1. 학과별 학생회는 독자적인 자치활동을 한다.
2. 학과별 대의원은 본 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22 조 (학과별 학생회 회칙준용)

학과별 학생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3 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경우에 따라서 임원회의 구성은 변경 될 수 있다. (개정2009.08.28) (개정 2017.12.05)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기획이사 1인

4. 총무이사 1인
5. 고문 1인
6. 감사 1인

제 24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은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대의원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17.12.05)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획이사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원우회 행사를 기획, 집행한다. (개정 2009.08.28)
5. 총무이사는 회무의 집행에 있어 재정을 관장, 집행한다.(개정 2009.08.28)
6. 고문은 공학대학원과 원우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임원활동이 제한된 부분에 도움이 됨으로써 본회의 연속성과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개정2009.08.28) (개정 2017.12.05)
7. 감사는 본회의 재무를 포함한 재반사항을 감사하여 대의원(원우회 및 과대/총무)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2009.08.28) (개정 2017.12.05.)(개정 2022.02.01.)
8. 임원의 직책과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회장의 권한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 기 및 선 거

제 25조 (임기 및 선거)

1. (임 기) 본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운영한다. 단, 선출직중 결원발생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8.28.) (개정 2017.12.05.)
2. (선 거)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장 입후보자격은 임원 및 과대표/총무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상위 득표 자 2명으로 재투표하여 선출 한다.
(개정 2009.8.28.) (개정 2016.6.30.) (개정2009.8.28.)(개정 2022.02.01.)
 - 나. 고문은 임원을 역임한 자를 우대 하여 입후보자를 선거로 선출하며, 졸업 등으로 유고 시 직전 임원의 직무대행 순으로 한다.
 - 다. 감사는 대의원(학과 과대/총무)을 역임한자 및 사회단체 임원 등을 역임한 자를 우대하며, 입후보자 선거로 선출한다.
(개정 2009.8.28.) (개정 2016.6.30.) (개정 2017.12.05.)
 - 라. 부회장, 총무, 기획이사는 원우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선거로 선출한다.
단, 마지막 학기 원우는 입후보를 제한한다. (신설 2016.6.30.) (개정 2017.12.05.)
3. (선거방식) 투표 권한은 대의원회(임원, 학과 과대, 총무)로 제한하되, 투표자 1인은 임원 입후보자 2인을 투표하며, 상위득표자 순으로 선출 한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신설 2016.6.30.) (개정 2017.12.05.)

4. 입후보자는 입후보 신청서를 선거일 2주전 임원회로 제출한다. 단, 입후보 신청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입후보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6.6.30.)
5. (선거기간) 선거일은 6월, 12월이며, 대의원회를 통해 5월, 11월에 정하고 즉시 공지 한다. (신설 2016.6.30.)

제 6 장 재 정

제 26 조 (개정)

1.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우회비
 - 나. 찬조회비
2. 경조금 지급범위 및 절차 (삭제 2018.06.12)
3. 원우회비 사용범위 및 절차 (신설 2021.03.11)
 - 가. 각 행사별 원우회비 혜택 대상은 다음으로 제한한다.
 - 첫째, 입학식은 해당학기 입학한 전체 원우를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졸업식은 졸업 기준 5학기 기간 내 원우회비를 납부한 원우를 대상으로 한다.
 - 셋째, 해당 학기 재난 및 특수한 사유로 워크샵 미진행 시 원우회비 사용 대책방안은 해당 학기 원우회비 납부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7 조 (원우회비)

1. 원우회비는 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18.06.12)
2. 등록금과 함께 원우회비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원우회 총무에게 직접 납입이 가능하며, 총무는 감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바로 납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06.12)

제 28 조 (찬조회비)

1. 찬조 또는 보조금은 회원 및 유지비로부터 회사 받을 수 있다.
2. 졸업생이 워크샵에 참여할 경우 1학기는 원우회비의 50%, 2학기는 100%의 찬조회비를 납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18.6.12)

제 29 조(삭제 2009.08.28)

제 30 조 (예산계획)

예산은 학기 초 대의원회에서 사업별, 항목별로 심의 조정 후 공학대학원장의 자문을 받는다.

제 31 조 (예산집행)

본 회의 예산 집행은 임원회에서 협의한 후 집행한다.(개정2009.08.28)

제 32 조 (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보고는 매학기 감사시행 후 총회에 보고 한다. (개정2009.08.28)

제 33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학기(6개월)기간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또는 9월 1부터 익년 2월말 까지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 34 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개정안은 대의원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개정2009.08.28)
2. 회칙개정안은 대의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회장은 이를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상 별

제 35 조 (징계)

회장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원우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원우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 원우회의 의결을 거쳐 중도 지위를 박탈되거나, 차기 임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신설 2017.12.05.)

제 36 조 (상벌 규정)

본 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신설 2017.12.05.)

제 37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2009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9년08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6년06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7년06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7년12월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8년06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1년03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2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